

工業所有權審判事例

(國) (內) (事) (件)

權利範圍確認

<大法院 第1部 判決> (1981. 11. 24)

裁判長: 大法院判事 이 성 렬

關與法官: // 이 일 규·전 상 석·이 회 창

1. 審判請求人(上告人): 1) 三英金屬工業株式會社(서울 강남구 하일동 350-2)
2) 임 병 주(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의 160)
2. 被審判請求人(被上告人): 최 관 식(서울 도봉구 쌍문동 531-13)
3. 原審決: 特許廳 1980. 12. 29字, 1980年 抗告審判(당) 審決
4. 主文: 原審을 破棄하고 事件을 特許廳抗告審判所에 還送한다.

5. 理由

審判請求人 訴訟代理人的 上告理由를 본다.

原審決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이 事件 登錄考案의 要旨은 中空小管을 繼續的으로 권회하는 公知된 技術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심봉을 어떻게 후퇴시키느냐는 具體的인 技術的 構成에 限定되는 것인데 이 事件 登錄考案의 構成과 이에 對稱할 被審判請求人(가)호 構成이 서로 다르고 그 效果作用도 다르므로 위(가)호 考案은 이 事件 登錄考案의 權利範圍에 속하지 않는다는 趣旨로 判斷하고 있다.

그러나 原審은 주로 올제4호 증과 갑제9호 증에 의하여 中空小管을 심봉에 권회하여 연속적으로 코일상 소관을 形成하는 技術思想이 이미 公開된 것 이라고 斷定하였음이 原審判決時 自體에 의하여 分명한 바 記錄에 의하면 위 올제4호 증과 갑제9호 증은 모두 日本國 特許

廳에서 發刊한 實用新案公報로 서 1974. 3. 19과 1974. 4. 19字 公告內容을 收錄한 것인데 審判請求人의 이 事件 登錄考案은 위 各 公告日字前인 1973. 9. 4字로 出願된 것임이 明白하므로 위 證據들만 가지고는 實用新案法 第5條 第1項에의 規定에 비추어 이 事件 登錄出願前에 위 技術思想이 이미 公知公用이 된 것이었다고 認定하기는 어려운 것이다.

結局 原審決에는 證據없이 事實을 認定한 違法이 있고 이 점에서 上告는 理由있으므로 다른 上告理由에 대한 判斷을 省略하고 原審決을 破棄하여 原審으로 하여금 더 審理케 하고자 還送하기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

一參考一

抗告審判

1980年 抗告審判(당) 第2號

抗告審判請求人: 최 관 식

被抗告審判請求人: 1) 삼영 금속공업주식회사

2) 임 병 주

主文: 原審決을 破毀한다. (가)호 圖面 및 그 說明書에 表示된 고리 製造裝置는 登錄 第11025號 實用新案의 權利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. 審判 및 抗告審判의 費用은 被抗告 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

審決

1978年 審判 第351號

審判請求人: 1) 삼영 금속공업주식회사

2) 임 병 주

被審判請求人: 최 만 식

主文: (가)호 圖面 및 그 說明書에 表示된 증공체 고리 製造裝置는 登錄 第11025號 實用新案의 權利範圍에 속한다. 審判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